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 보고서

의안 번호	3219
----------	------

2025년 12월 18일
교육위원회

I. 심사경과

-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년 10월 20일, 김경훈 의원 등 25명
- 회부일자 : 2025년 10월 23일
- 상정일자 :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1차 교육위원회
(2025년 12월 18일 상정, 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김경훈 의원)

1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이 현행 조례에 반영돼 있지 않아 법령 부적합성의 소지가 있는 실정임.
- 이에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에서 규정된 법령의 인용조문을 변경함(안 제23조제1항).
- “물품출납사무의 검사”를 “물품관리 검사” 등으로 변경함(안 제27조).

III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박광선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0일 김경훈 의원 등 25명에 의해 의안번호 제3219호로 공동 발의되어 2025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의 제목과 개별 조항에서 사용하는 인용 조문을 상위법령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과 같은법 시행령에 맞춰 변경하여 법령 간의 체계정합성을 높이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- 안 제23조제1항은 교육감과 교육장이 소관 물품의 훼손 등으로 물품보관자에게 변상책임을 명하는 근거와 방법, 절차 등을 정함에 있어 인용한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8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7조를 현행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- 구체적으로 해당 조문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88조가

2021년 4월 20일 일부개정으로 제60조로 이동하고, 같은법 시행령 제87조가 이듬해인 2022년 4월 20일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[표-1] 개정안 관련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

당초 규정	개정 규정
<p>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88조(물품의 훼손 등의 처리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물조사의 결과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이 발견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.</p> <p>(법률 제9174호, 2008. 12. 26, 일부개정)</p>	<p>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60조(재물조사 등) ② 제1항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이 발견되면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.</p> <p>(법률 제18086호, 2021. 4. 20, 일부개정)</p>
<p>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87조 (물품의 훼손 등의 처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8조에 따라 변상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변상은 현금으로 하되, 현금으로 변상시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할 때에는 현물로 변상시킬 수 있다. 2. 변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물품이 훼손된 사실이 발생하였을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하며, 그 사실이 발생한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한다. 3.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의 시가를 평가할 때에는 해당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당시의 가격, 감가 정도, 내용연수, 수량 등을 엄밀히 조사한 후 가격을 환산하여야 한다. <p>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감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(대통령령 제21447호, 2009. 4. 24, 일부개정)</p>	<p>< 삭제 ></p> <p>(대통령령 제32601호, 2022. 4. 20, 일부개정]</p>

- 동 조문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인용 조문의 오류를 수정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.
- 다만, 조문 개정이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된 2021년과 2022년으로부터 상당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야 추진되고 있는바, 서울시교육청은 법령 개정사항이 조례에 즉각 반영 되도록 법제 사무 추진에 주의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한편, 안 제27조는 조문의 제목을 “물품출납사무의 검사”에서 “물품관리 검사”로, 조문 내용 중 “물품출납원의 장부검사”를 “물품관리검사”로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.
- 동 조문 역시 2022년 4월 20일 일부개정된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에서 “법 제90조에 따라 시행하는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한 검사”를 “물품관리검사”로 약칭함에 따라 조문 내용에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,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가 사용하는 용어 등을 정리하려는 적정한 조치로 판단됩니다.

[표-2] 개정안 관련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90조 개정사항

당초 규정 (대통령령 제21447호, 2009. 4. 24, 일부개정)	개정 규정 (대통령령 제32601호, 2022. 4. 20, 일부개정)
<p>제90조(검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 공무원을 지명하여 법 제90조에 <u>따라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</u>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며, 정기검사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, 수시검사는 물품관리관, 물품출납 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교체될 때에 실시한다.</p> <p>③ 제2항에 따른 검사는 물품관리행위가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현물을 대상으로 표준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.</p>	<p>제90조(물품관리 검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법 제90조에 <u>따른 물품관리 검사(이하 "물품관리검사"라 한다)를</u> 하게 해야 한다.</p> <p>② 물품관리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며, 정기검사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, 수시검사는 물품관리관,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교체될 때에 실시한다.</p> <p>③ 물품관리검사는 물품관리행위가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현물을 대상으로 표준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.</p>

당초 규정	개정 규정
<p>(대통령령 제21447호, 2009. 4. 24. 일부개정)</p> <p>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 관리관,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 현황과 그 표준서식에 대하여 <u>검사를</u> 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(대통령령 제32601호, 2022. 4. 20. 일부개정)</p> <p>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 관리관,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 현황과 그 표준서식에 대하여 <u>물품관리검사를</u> 하게 할 수 있다.</p>

○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인용조문 정비 등을 통해 법령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어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(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-13602, 2025.10.30.).¹⁾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V. 토론요지 : 없음.

VI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.

VI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.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1) 의원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의견 제출(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-13602, 2025.10.30.)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항 중 “제88조 및 영 제87조”를 “제60조”로 한다.

제27조의 제목 “(물품출납사무의 검사)”를 “(물품관리 검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물품출납원의 장부검사”를 “물품관리검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3조(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)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경우 사실을 조사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<u>제88조 및 영 제87조</u>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27조(<u>물품출납사무의 검사</u>) ① 영 제90조에 따른 <u>물품출납원의 장부 검사</u>는 물품관리관이, 관서의 경우에는 해당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3조(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60조</u>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7조(<u>물품관리 검사</u>) ① ----- ----- <u>물품관리</u> <u>검사</u>----- ----- ---. ② (현행과 같음)</p>